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물 환 경 보 전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류독소를 고려한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, 물환경종합정보망을 통한 시험·분석결과와 대국민 공개근거 마련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조류경보 발령 대상항목에 조류독소 기준 추가 등 조류경보 제도 개선(안 별표 2·3·4)

- 1) 조류경보 발령 대상 항목에 조류독소 추가(안 별표2)
- 2) 조류경보 경계단계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 추가(안 별표3)
- 3) 조류경보 시험분석 결과를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, 국립환경과학원 직제 개편 반영(안 별표4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 대상항목란 중 “남조류 세포수”를 “남조류 세포수, 조류독소”로 하고, 같은 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환경부장관은 조류경보 발령 대상 외에도 조류감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인정되는 하천·호소를 관찰지점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2.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·주관하는 친수활동을 포함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료채취 및 분석을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친수활동 자제·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.

별표 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조류경보

가. 상수원 구간

경보단계	발령·해제 기준
관심	남조류 세포수가 2회 연속 1,000 세포/mL 이상인 경우
경계	남조류 세포수가 2회 연속 10,000세포/mL 이상인 경우 또는 1회차에 남조류 세포수가 10,000세포/mL 이상이고 2회차에 조류독소가 10µg/L 이상인 경우
조류 대발생	남조류 세포수가 2회 연속 1,000,000 세포/mL 이상인 경우
해제	남조류 세포수가 2회 연속 1,000세포/mL 미만인 경우

나. 친수활동 구간

정보단계	발령·해제 기준
관심	남조류 세포수가 2회 연속 20,000 세포/mL 이상인 경우
경계	남조류 세포수가 2회 연속 100,000 세포/mL 이상인 경우 또는 조류 독소가 20µg/L 이상인 경우
해제	남조류 세포수가 2회 연속 20,000 세포/mL 미만인 경우

별표 3 제1호나목 비고 제1호를 제2호로 하고, 같은 목 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목 같은 항에 제1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두 가지 이상의 발령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, 상위 단계의 정보를 발령한다.
4. 조류독소는 마이크로시스틴-LR, -YR, -RR, -LA, -LY, -LF의 합을 의미한다.

별표 4 제1호가목의 관심의 관계 기관란 중 “물환경연구소장”을 “물환경센터장”으로 하고, 같은 란 2) 중 “통보”를 “통보 및 물환경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대국민 공개”로 하며, 같은 목 경계의 관계 기관란 중 “물환경연구소장”을 “물환경센터장”으로 하고, 같은 란 2) 중 “통보”를 “통보 및 물환경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대국민 공개”로 하고, 같은 목 조류 대발생의 관계 기관란 중 “물환경연구소장”을 “물환경센터장”으로 하며, 같은 란 2) 중 “통보”를 “통보 및 물환경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대국민 공개”로 하고, 같은 목 해제의 관계 기관란 중 “물환경연구소장”을 “물환경센터장”으로 하며, 같은 란 중 “통보”를 “통보 및 물환경정보시스템 등을

통한 대국민 공개”로 한다.

별표 4 제1호나목 관심의 관계 기관란 중 “물환경연구소장”을 “물환경센터장”으로 하고, 같은 란 2) 중 “통보”를 “통보 및 물환경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대국민 공개”로 하며, 같은 목 경계의 관계 기관란 중 “물환경연구소장”을 “물환경센터장”으로 하고, 같은 란 2) 중 “통보”를 “통보 및 물환경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대국민 공개”로 하며, 같은 목 해제의 관계 기관란 중 “물환경연구소장”을 “물환경센터장”으로 하고, 같은 란 중 “통보”를 “통보 및 물환경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대국민 공개”로 한다. 별표 4 제2호 주의의 관계 기관란부터 같은 호 심각의 관계 기관란까지 중 “물환경연구소장”을 각각 “물환경센터장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주의의 조치사항란부터 같은 호 심각의 조치사항란까지 중 “물환경연구소장”을 각각 “물환경센터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물환경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018